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57
----------	------

2023년 9월 1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11일, 박철성 의원(찬성자 28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철성 의원)

가. 제안이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시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 개정(법률 제13924호, 2016. 1. 27. 일부개정)¹⁾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그동안 위원회는 법 제4조제5항('16. 1. 27. 개정 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재해영향, 재해저감 계획 등의 평가 및 심의를 목적으로 구성·운영되어왔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19. 5월 공문²⁾을 통해 법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로써 자치단체장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 그에 관해서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함을 요청한 바 있고,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5.30. 선고 99추85 판결)³⁾를 살펴보면,

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개정 전) 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6. 1. 27. 개정 후)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요청' 행정안전부 (하천관리과-8223, 2019.5.31.)

가. ~ 나. (생략)

다. 따라서 「지자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자체별 「재해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3)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대법원 2000.5.30. 선고 99추85 판결) 판례 중

기관위임사무⁴⁾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무에 관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표〕 참조)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적으로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표]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 4) 「지방자치법」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타의 기관에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기관위임사무의 예는 도로·하천·공원 등의 유지·관리·호적·경찰사무 등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 등에서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그 사무 처리에 관하여 주무부장관 기타 국가의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 해당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6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 ④ ~ ⑤ (생략)

- 따라서, 동 조례 폐지 후 관련 사무를 시장이 규칙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 여겨지고 이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본 조례 폐지 후 관련 사무의 연속성을 위해 서울시는 규칙 제정 등의 조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여겨짐.
- 참고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에 불과하며,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광역자치단체는 규칙을 통해 해당 사무를 운영((표) 참조)하고 있음(전라남도 조례 및 규칙 無).

[표] 전국 광역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현황

(2023.7.31. 기준)

연번	17개 광역자치단체	규칙공포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조례로 운영 중
2	부산광역시	2023. 7. 5.	
3	대구광역시	2021. 7.12.	
4	인천광역시		조례로 운영 중
5	대전광역시		조례로 운영 중
6	광주광역시	2019.12.15.	
7	울산광역시	2021.12. 7.	
8	세종특별자치시	2019. 9.30.	
9	경기도	2020. 1. 7.	
10	강원도	2019. 9.20.	
11	충청북도	2019. 7. 5.	
12	충청남도	2019. 6.20.	
13	전라북도		조례로 운영 중
14	전라남도		조례 및 규칙 無
15	경상북도	2020. 1. 9.	
16	경상남도	2019. 9.26.	
17	제주특별자치도	2020. 7.15.	

[붙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붙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운영개요

- **위원수 : 40명**(위원장 1인 : 물순환안전국장)
 - 구성인원 : 내부 1명, 외부 39명
 - ※ 시의원 참여현황 : 없음
 - 임기 : 2022.08.01 ~ 2024.07.31
- **기 능 :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 내부위원 1명, 도시계획(4명), 상하수도(4명), 수자원(8명), 조경(2명), 토목시공(6명), 산림(1명), 토양환경(2명), 토질 및 지질(6명), 건축(4명), 교통(2명)
- **설치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검토대상 및 내용

- **검토대상**
 -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재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
- **검토내용(심의내용)**
 -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 해당 사업으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개최현황(2023.9. 기준)

협의대상		심의방법	2021년	2022년	2023년
소 계			37	35	15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서면	32	25	11
개발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서면	4	9	3
	재해영향평가	소집	1	1	1

□ 위원명단

연번	분야	성명	현직	주요 경력 및 자격(기술사 등)
1	도시계획	안경호	(주)동명기술공단 도시사업본부 부사장	도시계획기술사 천안시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 속초시도시계획위원
2	도시계획	노혜진	케이에스엠기술(주) 상무	현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현경기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그외다수
3	도시계획	이성로	(주)신명건설기술공사 부사장	현 (주)신명건설기술공사 전(주)선진엔지니어링 전서울시청(강서구도시계획과) 도시계획기술사
4	도시계획	유명소	동림P&D 부사장	현 용산구도시계획위원 현광명시·오산시도시계획위원 전은평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5	상하수도	김문모	신구대학교 토목과 교수	신구대학교 정교수 수자원개발기술사 도시계획기사 토목기사
6	상하수도	안재현	서경대학교 교수	현 한국방재협회 부회장 현행정안전부정책자문위원(재난관리) 현행정안전부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7	상하수도	도종호	(주)삼보기술단 부사장	상하수도기술사
8	상하수도	소기욱	(주)도화엔지니어링 부회장	상하수도기술사
9	수자원개발, 방재	김주성	(주)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3부 부사장	한국방재협회 이사 건설부국립건설시험소 (주)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10	하천, 수자원	오정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선임연구원 전연세대학교연구교수
11	수자원개발	김진영	(사)방재 관리연구센터 이사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건설부,내무부,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인천광역시부시장
12	수자원개발	이희창	한국건설관리공사 기술연구소 상무	수자원개발기술사 (주)삼보기술단
13	수자원, 방재	서근순	(주)신성엔지니어링 부사장	현 (주)신성엔지니어링 수자원/방재 전(주)석탑수자원/방재 전(주)웨텍수자원/방재 수자원개발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14	수자원, 방재	김선희	수유시정연구원 원장	현 수유시정연구원 원장 전국토연구원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장 전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수질기사1급
15	수자원개발	조경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현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현환경부중양환경분쟁조정위원 현한국공학한림원일반회원
16	수자원개발	정혜근	건국대학교 교수	현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17	조경	박기숙	(주)이산 상무	조경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8	조경	안영애	안스디자인 조경설계사무소 소장	서울시 기술심의위원
19	토목시공	김석태	(주)오케이건설 토목사업본부장 (現(주)대림이앤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기술자문위원 한국수자원공사일반기술심의위원
20	토목시공	류지영	(주)건화 감리CM본부 이사	한국방재협회 기술심의위원 경상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 건설안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21	토목시공	연제문	(주)대한콘설탄트 도로구조건설사업관리부	건설신기술자문위원 토목시공기술사

			부사장	
22	토목시공	이상수	(주)휴먼씨엠건축사 대표	특급건설기술자(토목) 방재 관리대책대행자 기업재난관리사(대행,평가)
23	토목시공	한상희	(주)에스앤씨산업 이사	시설물, 가설구조물 시공 성주대교가설교량시공 음성-충주고속도로구조물설계 토목시공기술사
24	토목시공	김숙자	건양대학교 교수	현 건양대학교 교수 전국토교통부근무 전국무총리실근무 건설안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국제기술사
25	산림	임상준	서울대학교 교수	현 서울대학교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 전한국건설기술연구원선임연구원 전신구대학 전미VirginiaTechPost-Doc연구원
26	토양환경	신지영	(주)다산컨설턴트 전무	폐기물처리기술사 환경영향평가사 오산시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위원
27	토양환경	오윤관	헤인이엔씨	폐기물처리기술사 (주)벽산엔지니어링
28	토질·지질	곽정하	(주)셀파이엔씨 대표이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29	토질·지질	오정배	(주)천일 지반터널부 부사장	한국도로공사 기술자문위원
30	토질·지질	임훈섭	(주)천마기술단 전무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기술자문위원(2019~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기술자문위원(2018~현재) 경기도기술자문위원(2019~현재)
31	토질·지질	정형진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철도청, 서울시, SH공사 동부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 토질및기초기술사 철도기술사
32	토질·지질	차경섭	(주)대우건설 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토질및기초기술사 지반신소재학회이사 행정안전부방재신기술심사위원 한국항만협회기술분과위원 건설공사설계/시공기준집필위원
33	토질·지질	현윤정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현 한국환경연구원 전서울대학교BK21지구환경과학사업단
34	건축	김대영	한빛구조 ENG 대표이사	대우건설 임원 국토부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 건축구조기술사
35	건축	김정근	(주)동해종합기술공사 건축부 상무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 인천도시공사기술자문위원 서초구공공건축전문자문위원
36	건축계획	고미애	(주)단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현 (주)단건축사사무소 전(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37	건축계획	김공숙	(주)토림종합건축사사무소	현 (주)토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전하나건축사사무소 전(주)남광토건
38	교통	임광수	주엔지니어링(주) 부사장	현 주엔지니어링 부사장 전미래이앤디상무 전하이콘엔지니어링이사
39	교통	박규영	(주)더원이엔지 전무이사	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현한양사이버대학교겸임교수 전한국교통연구원책임연구원 교통기사1급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박철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57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1일

발 의 자: 박철성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김인제, 김형재,
남창진, 민병주, 박승진,
박영한, 봉양순, 왕정순,
유정인, 유정희, 윤종복,
이병도, 이상욱, 이소라,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한 신,
홍국표 의원(28명)

1. 제안이유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시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며,
-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다. 기타 : 해당사항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